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도로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상위 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시행령」의 위임 및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(안 제3조제2항)

・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%로 제한

나.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(안 제4조)

・준주택(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)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

・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

・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

다. 도로점용료 반환 조항 신설 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[기획감사실-4423('17. 5.11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 없음[주민복지과-27984('17. 5.17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'17. 6. 1. ~ '17. 6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도로법」및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이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」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,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안 제3조제2항에서는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연간 도로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%로 제한 적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준주택(주거의 형태에 한정)에 출입하는 경우와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및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확대하였으며,
안 제6조 점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반환 절차·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,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